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자료의 요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2. 「주민세법」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제1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

제18조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2호 다목 중 “법 제12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제7항”으로, 라목 중 “법 제12조제5항”을 “법 제1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u>< 신 설 ></u>	제14조의2(자료의 요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. 「주민세법」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② (생략)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. 1. ~ 5. (생략) <u>< 신 설 ></u>	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
제1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②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고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	제1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황과 같음) ② -----법 제12조제1항·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<별표 5> 과태료의 부과기준

1. (생략)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령	과태료 금액
가. ~ 나. (생략)	-	-
다. 법 제12조제4항(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 제3호	50만원
라. 법 제12조제5항(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 제1호	200만원
마. ~ 서. (생략)	-	-

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

--.

<별표 5> 과태료의 부과기준

1. (현행과 같음)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령	과태료 금액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	-	-
다. 법 제12조제7항(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 제3호	50만원
라. 법 제12조제8항(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 제1호	200만원
마. ~ 서. (현행과 같음)	-	-